

부산지방법원 2021. 12. 16 선고 2020가단3385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홍성용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

담당변호사 박옥봉

변 론 종 결 2021. 11. 4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6.

주 문

1.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10. 1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. 10. 10. 접수 제24284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. 4. 8. ‘C은 원고에게 98,661,564원 및 그 중 20,148,702원에 대하여 1999. 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(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59735호)을 받은 후, 위 판결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. 3. 31. ‘C은 원고에게 125,791,004원 및 그 중 20,148,702원에 대하여 2014. 2. 13.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6883호)을 받았는데, 위 지급명령은 2014. 6. 13.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8. 확정되었다.

나. C은 2018. 10. 10.경 피고로부터 200,000,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242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C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E 255㎡에 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,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(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),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빌라 2층 146.89㎡가 2019. 10. 29. 215,000,000원에 매매된 사실, 경남 하동군 E 답 255㎡은 C의 피상속인인 H가 2013. 12. 27. 매매대금 4,200,000원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한편,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144,546,961원[= 125,791,004원 + 1,323,190원(= 20,148,702원 × 0.17 × 141일/365일) + 17,432,767원(= 20,148,702원 × 0.2 × (4년 + 119일/365일))]인데, 추가로 피고로부터 200,000,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,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C의 채무는 344,546,961원으로,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경남 하동군 E 답 255㎡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C과 별다른 인연도 없는데, C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부탁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C에게 200,000,000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, 피고는 1995년경 C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라. 소결

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덕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 : 부산광역시 금정구 빌라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금정구

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아파트

1층 312.24㎡

2층 312.24㎡

3층 312.24㎡

4층 312.24㎡

5층 312.24㎡

6층 312.24㎡

7층 257.4㎡

8층 105.31㎡

지하 436.83㎡

부속건물

벽돌조 슬래브지붕 수위실 8.20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소재지번 : 1.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 792㎡

2.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 4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146.890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83600분의 5633

대지권종류: 2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83600분의 5633 끝.

